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74
----------	-----

2023년 7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6월 22일 상정·의결 (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 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 공공의료의 안정적인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의료원 사업에 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종전의 제7호를 제8호로 변경)
 -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 신설

나. 조례의 부칙으로 기존 조례의 폐지, 직원에 대한 조치 규정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직원에 대한 조치 규정(안 부칙 제3조)
 - ▶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정원외 직원포함)은 서울의료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 근로조건은 서울의료원의 정관과 규정을 따른다.

다. 다른 조례 개정(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관련 조례 정비)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 삭제(제4조제1항)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개정(제4조제2항)
 - ▶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수행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 위탁 기관을 서울의료원으로 명확화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 개정(부칙 제4조제3항)
 - ▶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부칙 제4조4항)
 -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 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3. 4. 13. ~ 5. 3.) 결과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III.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의 통합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 공공의료의 안정적인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통합 기본계획¹⁾ 〉

i) 추진배경

-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용역」결과, 보다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통합 필요
 - (분석결과) 재단 수행업무 대부분 성과제고 가능 낮음
 - (싱크탱크) 자체연구 및 1인당 연구실적 낮음
 - (거버넌스) 네트워크 운영, 활용, 강화 등의 전문성·적극성 미흡
 - (공공의료기관 경영개선) 의료장비 통합구매는 당초 서울의료원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재단 운영에 따른 성과가 아님

ii) 추진경과

-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21.10.~'22.11.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의료원 의견청취(2회): '22.11.4., 11.21.
 - 기관 통폐합 심의·결정: '22.11.30., 12.23.

※ 제9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 (통합대상)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의료원
- (통합방식) 재단 - 市 업무 재설계 후 서울의료원 내 정식기구 신설
- (고용승계) 기존 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감안해 통합 시 고용승계
- (인사조직체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단일 보수체계 실시

1) 자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2023. 2.)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통합 기본계획.

2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현황

가. 일반현황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체계적 운영 지원, 공공보건의료체계 플랫폼 구축 등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7월 1일 설립²⁾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사업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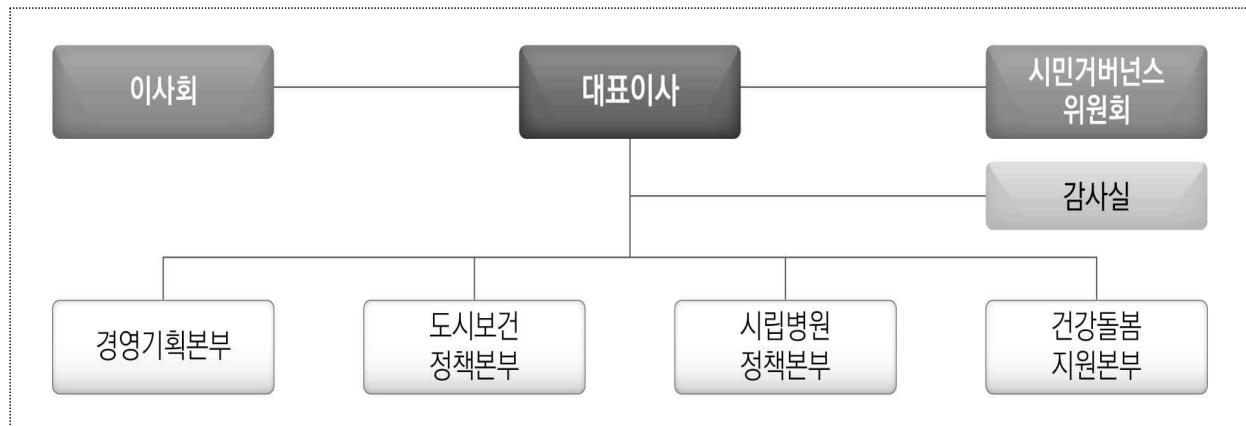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2.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3.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4. 시립병원,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 훈련
5.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6.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7.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8.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을 필요한 사업

2)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3. 3.)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 조직은 4본부 1실로 구성, 인력은 정원 53명, 현원 49명이며, 2023년 예산 규모는 65억 3800만원임.

〈 2023년도 공공보건의료재단 조직·인력 및 예산³⁾ 〉



(단위 : 명, '23.1.31.기준)

구 분	계	대표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정 원	53	1	4	6	11	16	15
현 원	49	0	3	6	11	16	13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6,538	계	6,538
출 연 금	5,205	정 책 사 업 비	1,195
잉 여 금	1,333	일 반 관 리 비*	5,107
		예 비 비	236

* 일반관리비(인건비 및 운영비)

3)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3. 3.)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나.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지원단) 설립 과정

- 2012년 2월 1일 전부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운영) 및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7호 '공공의료지원단 설치·운영 계획'(2012.4.5)에 근거를 두고,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전국 최초로 2012년 7월 설립됨⁴⁾.
- 당시 지원단은 서울의료원의 의학연구소 정책연구실의 기능을 흡수·통합하여 서울의료원 내 사업단 형태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 제정(2014. 7. 17.)됨⁵⁾.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서울의료원 위탁조직이 갖는 불안정한 고용(한시적 계약직 형태) 구조하에 우수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지원단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음. 이에 연구원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량과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져 인력의 소진과 이직, 지원단과 개인 모두 전문성과 역량을 축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함⁶⁾⁷⁾.
- 특히 지원단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던 시립병원 평가 업무의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서울의료원을 산하조직인 지원단이 평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은 당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됨⁸⁾.

4)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22. 12. 05.)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p25.

5)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2. 02. 28.)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지원단) 10년사 2012~2021, p41.

6)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2. 02. 28.)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지원단) 10년사 2012~2021, p41.

7)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22. 12. 05.)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p25.

일시 2012년 9월 5일(수) 오전 10시

- ◎ (정OO 위원) 그게 지금 이름만 바뀐 것이고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단이 서울의료원이 아니고 서울시청 안에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 ◎ (정OO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서울의료원에 두는 것입니까?
- ◎ (복지건강실장) 먼저 시 내에 조직을 설치하려면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원, 조직 이것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준에 있던 공공의료정책연구실을 활용하면서 그 기능을 좀 더 키워 가지고 여기에 정리된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서울의료원에 공공의료지원단을 설치한 것입니다.
- ◎ (복지건강실장) 한시적인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정OO 위원) 한시적인 조치라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서울의료원 안에 두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서울의료원의 경영이나 평가에 부정적이게 보이기도 되고 또 다른 시립병원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어떻고 지금 여러 가지 연구원 자체도 서울의료원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 공정하게 한다면 당연히 서울시청 안에 둬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
- 이후 2013년 6월 27일 ‘시립병원 개혁’을 위한 숙의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는 서울시장과 복지건강실장(현 시민건강국), 보건정책관 및 집행부, 서울의료원장, 보라매병원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함. 당시 서울시장은 시립병원 개혁을 위해 현행의 지원단을 확대·개편한 전문적 지원기구의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직후인 7월 발표된 ‘시민친화 공공의료 강화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시립병원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조직의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됨⁹⁾.
 - 이후 지원단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 방안 연구(2013)’를 수행하고, 검토결과 ‘재단법인’ 형태의 조직 설립을 제안하였으나 i)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지 못하였고, ii) 신설될 재단법인 역시 시립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과 법적으로는 동일한 법인의 위

8)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2. 02. 28.)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지원단) 10년사 2012~2021, p41~42.

9)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2. 02. 28.)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지원단) 10년사 2012~2021, p42.

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 간의 위계 구조가 모호하여 ‘시립병원 개혁’이라는 목적 달성에 의문이 제기됨¹⁰⁾.

- 이에 2013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재단 설립과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서 재단 설립의 첫 번째 시도는 좌절됨. 그러나 이후에도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에 대한 거버넌스 리더십을 탑재한 독립 기구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었고, 2015년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2013년 첫 번째 시도 당시 재단 설립에 우려를 표했던 시립병원들이 점차 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결정적으로 재단 출범이 진행됨¹¹⁾.

-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해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¹²⁾ 및 「민법」 제32조¹³⁾에 근거하여 2017년 7월 1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설립됨¹⁴⁾.

10)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2. 02. 28.)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지원단) 10년사 2012~2021, p42.

11)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2. 02. 28.)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지원단) 10년사 2012~2021, p42.

1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3)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폐합 추진 논의

-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추진계획(2021. 7.)」에 따라, 기획조정실(공기업담당관)에서는 “최근 3년 이내 경영평가 저조 기관 및 신설 기관의 경영효율화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함¹⁵⁾.

〈 서울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

과제명 : 서울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과업내용 : 기관별 경영현황 분석 및 경영효율화 방안 제시

연구기간 : 2021. 9. ~ 2022. 9.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21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에 따라 18천만원 이상 용역은 10개월 이상 추진

대상기관(안) : 경영평가 등급 저조기관* 및 최근 3년이내 신설 법인

- 저조기관(10) : 에너지공사, 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 디자인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 신설법인(2) :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 TBS

* 저조기관 : 최근 3년이내 최하등급(라등급) 1번 또는 다등급 2번 이상 받은 기관

* 대상기관은 용역수행 업체와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용역비 : 199,000천원(시비 199,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해당 연구는 서울시 20개 출연기관 중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하였는데,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경우 2019년에 ‘최하등급(라등급)’, 그다음 해인 2020년에 ‘다등급’을 받아, 저조기관(최근 3년이내 최하등급(라등급) 1번 또는 다등급 2번 이상 받은 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영효율화 연구 대상기관에 포함됨¹⁶⁾.

14)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2. 02. 28.)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지원단) 10년사 2012~2021, p43.

15) 자료: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2021. 07.) 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추진계획, p1.

16) 자료: (주)비손파트너스(2022. 11.)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연구 최종보고서, p6.

〈 서울시 출연기구 경영효율화 연구 최종보고서 〉

본 연구는 서울시 20개 출연기관 중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경영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구분	2018년 ('17년 실적)	2019년 ('18년 실적)	2020년 ('19년 실적)	
가	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여성가족재단 서울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재단 서울관광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20개 출연기관 중 대상기관 기준(설립후 3년이 경과된 기관, 최근 3년 이내 '라' 등급 또는 '다' 등급 2회 이상 기관)으로 선정하면 총 9개 기관임
나	서울산업진흥원 50플러스재단 신용보증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서울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자원봉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 디자인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다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마케팅 세종문화회관 평생교육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라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디지털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기술연구원	<p style="text-align: right;">※ 장학재단은 소규모(정원 13명)로 제외</p>

- 본 연구(2022. 11.)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설립 이후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경영개선, 싱크탱크, 거버넌스 플랫폼 기능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불명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개선의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서울의료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제시됨¹⁷⁾.

17) 자료: (주)비손파트너스(2022. 11.)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연구 최종보고서, p59.

〈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정체성, 차별화, 기능조정 및 통·폐합 현황분석 종합결과 〉

정체성, 차별화, 기관 통폐합 관련 분석 결과	기능 조정 관련 분석 결과
<p>공공보건의료재단은 기관의 핵심기능에서 성과가 미흡하며, 향후 개선 가능성 또한 낮은 상황임에 따라 서울의료원으로의 통합, 서울시로의 기능이관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건의료재단은 현재 싱크탱크 역할에 부합하는 연구인력이 전체인원 48명의 78%(42명)에 해당하는 수준의 가장 큰 규모 ▪ 반면, 재단의 성과는 순수자체연구가 18년~21년 18%~52% 수준으로 미흡함 ▪ 또한, 재단의 일몰/단년도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6.3%~17.3%에 해당하는 등 재단 사업의 다수가 변경되고 있음 ▪ 감염병연구센터(20.7 설립)와 기능중복이었으나 중복기능 이관 ▪ 재단의 기능 중 서울의료원으로 통합하는 기능과 서울시 시민건강국으로 이관하는 기능으로 구분하여 통합 고려 필요 	<p>재단의 핵심기능 중 공공의료기관 경영개선의 전문성 미흡, 싱크탱크역할 성과 미흡, 거버넌스 플랫폼 목표 및 성과 불명확 등 대부분의 기능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상황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핵심기능별 성과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공공의료기관 경영개선 : 재정자립도, 컨설팅 등에서 성과제고 없음(기존 성과 유지), 의료장비 심의 및 공동구매 예산절감효과 존재(재단이 수행하기 때문이 아닌, 수행기능 자체로도 효과가능) ▪ 싱크탱크 : 연평균 자체연구 수행비율 38%로 연구성과 미흡 ▪ 거버넌스 플랫폼 : 사업의 결과적 목적과 목표 불명확 ▪ 재단 핵심기능 중 성과유지는 가능한 기능(의료장비 공동구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기능은 성과제고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연구의 최종보고가 발표(2022. 11.)되기도 전인 2022년 7월에 서울특별시(공공기업담당관)는 「투자·출연기관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¹⁸⁾, 그 계획에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은 ‘통·폐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또한 같은 달인 7월 17일에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등은 기존 기관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돼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과 용역 결과가 나와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통폐합 대상이나 시점과 관련해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힘¹⁹⁾.

18) 자료: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2022. 7.) 투자·출연기관 혁신 추진계획

19) 자료: 고현실, 2022.07.17.,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연내 윤곽...사전작업 '속도' ”, 연합뉴스,

- 그 이후, 2022년 7월 29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²⁰⁾, 해당 가이드라인의 5대 분야 중점 효율화 중에 하나가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은 일원화(통폐합) 및 축소’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이러한 i)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 와, ii)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고, 지난 2월에는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통합 기본계획」을 시장방침으로 수립²¹⁾함.
- 서울시에 따르면, 향후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의 기관 통합 추진을 위한 향후계획(안)은 다음과 같음.

〈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기관 통합 추진) 〉

- | | |
|-------------------------------------|---------------|
| ○ 서울시-재단-의료원 노사정 합의(안) 마련 예정 | : '23. 6. |
| ○ 제3 노무법인 선정 후 컨설팅(임금체계 등) 계약 체결 | : '23. 6. |
| ○ 해산 절차 이행 (공공보건의료재단) | : '23. 9.~11. |
| - 이사회 의결 및 시장 승인, 해산·청산 등기, 재산 이관 등 | |
| ○ 정관 등 제규정 개정 (서울의료원) | : '23. 9.~10. |
| ○ 근로계약 등 통합절차 진행 (서울의료원) | : '23. 11. |
| ○ 통합 출범식 | : '23. 11. |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7028100004>

20) 자료: 기획재정부(2022. 7. 29.)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p2.

21) 자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2023. 2.)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통합 기본계획

3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① 서울의료원 사업에 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종전의 제7호를 제8호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3조(사업) ① ----- -----. 1. ~ 6. (현행과 같음) <u>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보건의료사업</u>
7. 그 밖에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8. ----- <u>시장</u>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제3조의3</u> (생 략)	<u>제3조의2</u> (현행 제3조의3과 같음)
제13조(과태료) ① (생 략)	제13조(과태료)(현행 제1항과 같음)

- 현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제정²²⁾되었으며, 이 법 제7조²³⁾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3. 삭제
 4. 의료인 · 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 · 대학 또는 연구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 ·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3조(사업) 서울의료원의 ‘사업 범위’에는 「지방의료원법」 제7조제1항제8호²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

22) 「지방의료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3. 삭제 <2015. 1. 28.>
 4. 의료인 · 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 ② <생략>

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이러한 이유는, 그동안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호²⁵⁾를 근거로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이 조례 제3조에 별도로 해당 근거를 둘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의 통합 추진이 결정되었고, 추후 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폐지가 될 예정이므로, 사전에 이 조례에 ‘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로 보여지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됨.

나. 부칙 내용의 타당성 검토

- (안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의 통합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2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7. <생략>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생략>.

25)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략>

8.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²⁶⁾된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이 통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그대로 남겨 두게 되면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라 필요한 조치로 보여짐.
- (안 부칙 제3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재직하던 정원외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은 서울의료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고, 근로계약 방식과 보수체계, 승진 등 근로조건은 의료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모든 직원들의 구제책으로 보여짐.

부 칙

제3조(직원에 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정원외 직원 포함)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 근로계약 방식과 보수체계, 승진 등 제반 근로조건은 의료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따른다.

-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23. 4. 13. ~ 23. 5. 3.) 결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노동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용승계 조항’의 명시와 ‘기존 의료원의 직원과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서울시가 일부 반영한 조치로 보여짐.

26)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서울특별시립병원, 보건소 및 지역사회 의료자원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단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직원들의 신분·급여 등의 근로조건과 ‘서울의료원’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상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조건에 대한 상호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재단노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조례와 동일하게 명시 요함 제4조(직원에 대한 조치)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모든 직원(정원의 직원 포함)은 의료원의 직원으로 본다 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직원에 대하여 종전의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승진, 보수, 직급, 직책 등에 관하여 기존 의료원의 직원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해고없는 고용 보장 의결” (공기업담당관-30047호2022.12.26.) -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통합 기본계획(2023.2.23.)에 의한 고용보장 사항 시장 방침 - 市입장은 해고없는 고용보장으로 재단 해산 후 직원들을 서울의료원에 고용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임 - 따라서 노조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 추후 근로조건에 대한 별도의 협의할 예정임
전국공공 노동조합연맹	공공보건의료재단노동조합과 동일한 의견임	위와 동일한 서울시 입장임

- (안 부칙 제4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의 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부 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를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위탁운영)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위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4호 중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6호 아목을 삭제한다.

- 우선 (안 부칙 제4조제1항)은 현행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를 삭제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	<삭 제>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수행한다.	

②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기능,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
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14조 (생략)

제13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 제22조²⁷⁾에는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근거 규정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수행한다”는 규정을 두었던 것인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의 통합이 결정되어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27) 「공공보건의료법」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 (안 부칙 제4조제2항) 현행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28)에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i)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위탁하여 수행한다고 ‘수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ii)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 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u>공공보건의료기관 등 공공의료에 관해</u> 전문성을 갖춘 <u>공공기관</u>에 위탁 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의 사무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p>	<p>제4조(위탁운영) ① ----- ----- <u>공공의료에 관한</u> ----- ----- <u>서울특별시</u> <u>서울의료원에 위탁한다.</u> <u>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u> <삭 제></p>

28)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공공의료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의 사무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차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 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²⁹⁾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i) ‘설치 여부’와, ii) ‘운영의 위탁’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부칙 제4조제3항) 현행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5조³⁰⁾에는 보건의료인력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
- 29) 「공공보건의료법」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 운영) ① 시 ·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 30)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5조(보건의료인력지원정책 심의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 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담당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을 당연직 간사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서울시에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의사회 · 치과의사회 · 한의사회 · 약사회 · 조산사회 · 간호사회 및 간호조무사회에서 추천 하는 사람
3.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이 추천하는 사람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6. 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⑤ ~⑥ <생략>.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의 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현재 해당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사람)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인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건의료인력지원정책 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5조(보건의료인력지원정책 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담당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을 당연직 간사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u> 이 추천하는 사람	4. <u>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u> ----- -----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 (안 부칙 제4조제4항)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제1항제6호³¹⁾에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의 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하는 사항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인데, 별다른 문제는 없겠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 략)</p> <p>6. 보건복지위원회</p> <p> 가. ~ 바. (생 략)</p> <p> 사. 삭제</p> <p> <u>아.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관한 사항</u></p> <p> 자. (생 략)</p> <p>7. ~ 11. (생 략)</p> <p>② (생 략)</p>	<p>제3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p> <p> 가. ~ 바. (현행과 같음)</p> <p> <u><삭제></u></p> <p> 자. (현행과 같음)</p> <p>7. ~ 11.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3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5. <생략>.
6. 보건복지위원회
 - 가. 복지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시민건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서울의료원에 관한 사항
 - 마. 서울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 바. 여성가족재단에 관한 사항
 - 사. 삭제 <2022.12.30>
- 아.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관한 사항
 - 자.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사항
7. ~11. <생략>.
- ② <생략>.

3 종합의견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의 통합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 공공의료의 안정적인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부칙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이 조례에 ‘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됨.
- 다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직원들의 신분·급여 등의 근로조건과 ‘서울의료원’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상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조건에 대한 상호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붙임1]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현황(2023.1.기준)

구분	설치일	위탁기관	총예산 (백만 원)		인력 (현원, 명)	팀구성
			'22년 (국비)	'23년 (국비)		
서울	'17. 7. 24.	독립 재단법인	7,127 (0)	5,200 (0)	49명 (대표이사(겸임) 1명, 연구직 35명, 행정직 13명)	도시보건정책본부 시립병원정책본부 건강돌봄지원본부 경영기획본부 감사실
부산	'15. 10. 1.	부산광역시의료원	665 (150)	610 (150)	9명 (단장-겸직 1명, 연구직 7명, 행정직 1명)	공공의료팀 시민건강팀 기획통제팀
대구	'20. 7. 1.	경북대학교병원	750 (150)	700 (150)	10명 (단장-겸직 1명, 부단장 1명, 연구원 6명, 행정연구원 2명)	공공정책팀 협력지원팀 행정지원팀
인천	'14. 1. 1.	인천광역시의료원	737 (150)	714 (150)	9명 (단장-겸직 1명, 부단장 1명, 연구직 7명)	공공보건의료 정책기획팀 공공보건의료 기관강화팀 사무국
광주	'20. 5. 1.	전남대학교병원	450 (150)	550 (150)	7명 (단장-겸직 1명, 연구원 5명, 행정원 1명)	정책연구 및 연계지원팀
대전	'20. 5. 4.	충남대학교병원	600 (150)	600 (150)	8명 (단장-겸직 1명, 연구직 6명, 행정직 1명)	정책연구팀 사업지원팀 행정팀
울산	'20. 10. 1.	울산대학교병원	300 (150)	358 (150)	6명 (단장-겸직 1명, 비상근 연구원 1명, 상근직 연구원 4명)	정책연구기획팀 사업연계지원팀
경기	'17. 3. 22.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1,275 (150)	1,575 (150)	14명 (단장-겸직 1명, 연구직 12명, 행정직 1명)	공공의료정책팀 보건의료정책팀 행정지원팀
강원	'19. 5. 7.	강원대학교병원	600 (150)	600 (150)	7명 (단장-겸직 1명, 연구직 6명)	정책연구팀 기술지원팀
충북	'21. 6. 1.	충북대학교병원	330 (150)	500 (150)	8명 (단장-겸직 1명, 부단장-겸직 1명, 비상근 참여교수(겸직) 1명 연구원 4명, 행정직 1명)	보건정책팀 의료정책팀 행정팀
충남	'21. 11. 1.	충남대학교병원	600 (150)	600 (150)	10명 (단장-겸직 1명, 부단장 1명, 연구원 7명, 행정요원 1명)	정책연구팀 사업지원팀 사무국
전북	'22. 3. 11.	원광대학교병원	300 (150)	500 (150)	8명 [단장(겸임) 1명, 부단장(겸임) 1명, 연구원 5명, 행정원 1명]	기획연계팀 정책연구팀
전남	'19. 7. 31.	도 직접운영	300 (150)	300 (150)	4명 (단장-겸직 1명, 연구직 2명, 행정직 1명)	정책연구팀 기술지원팀
경북	'22. 3. 1.	김천의료원	580 (150)	562 (150)	7명 [단장(겸임) 1명, (부단장 공석), 연구원 5명, 행정연구원 1명]	정책연구팀 기획행정팀
경남	'19. 4. 24.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1,100 (150)	1,100 (150)	14명 (단장-겸직 1명, 연구직 12명, 행정직 1명)	공공의료팀 지역보건팀 권역통합의료본부 추진단 사무국
제주	'17. 3. 15.	제주대학교병원	800 (150)	900 (150)	10명 (단장-겸직 1명, 연구직 9명)	기획조정팀 공공보건정책팀 의료서비스정책팀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기획운영실(2023. 4.) 2022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성과집

[붙임2]**공공보건의료재단 일반현황(2022년 기준)****【기본현황】**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와이즈타워 20층
- 규모 : 1,144m²
- 주요시설 :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등
- 사업대상 : 시립병원, 보건소, 시민 등

**【주요연혁】**

- 2016.09.29.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 2017.06.29.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허가(보건복지부)
- 2017.07.24.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범(제1대 대표이사 이영문)
- 2020.02.10. : 제2대 대표이사(김창보) 취임
- 2021.03.02.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사무소 이전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 : 4본부 1실
- 인력 : 정원 53명, 현원 52명(정원 외 5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2(6.27.기준)	8,312	2,050	24.7%

【주요업무】

- ①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분석,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 ②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 ③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 ④ 시립병원,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 훈련
- ⑤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 ⑥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 ⑦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 ⑧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 ⑨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을 필요한 사업

【붙임3】**서울의료원 일반현황(2022년 기준)****【기본현황】**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
- 규모 : 대지 $60,662 m^2$, 건물 $117,402 m^2$
- 병상 : 665병상
- 주요시설 : 진료실, 병동, 권역응급의료센터, 국가 지정입원치료병상
- 사업대상 : 서울시민 및 의료환자 등

**【주요연혁】**

- 1977.07 : 강남구 삼성동 서울시립강남병원 개원
- 1982.09 : 지방공사 강남병원으로 전환
- 2011.05 :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 신축 개원
- 2013.01 : 국내최초 환자안심병원 운영
- 2020.02 :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코로나19 대응
- 2021.12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5년 연속 최우수 기관('16~'20)
- 2021.12 :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운영평가 8년 연속 최우수 기관('14~'21)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 : 6부 4실 1본부, 7센터 25진료과 28팀, 1연구소 2위원회
- 인력 : 정원 1,950명, 현원 1,724명 (정원 외 65명)

【예산 및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2(6.30 기준)	22,374,450	8,594,150	38.4%

【주요업무 및 최근 3년 간 추진 실적】

- 주요업무 : 필수의료분야 강화·중증질환 진료 강화 등을 통한 공공의료 질 향상
- 최근 3년간 추진실적(진료실적)

(단위 : 명)

구분	합계	외래	입원
2020년	453,175	377,744	75,431
2021년	519,779	393,112	126,667
2022년 6월말	232,098	191,013	41,085

※ '20.2. ~ '22. 5. :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74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 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 공공의료의 안정적인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의료원 사업에 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 제1항 7호 신설, 종전의 제7호를 제8호로 변경)

-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 신설

나. 조례의 부칙으로 기존 조례의 폐지, 직원에 대한 조치 규정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안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직원에 대한 조치 규정(안 부칙 제3조)

- ▶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정원외 직원포함)은 서울의료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 근로조건은 서울의료원의 정관과 규정을 따른다.

- 다. 다른 조례 개정(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관련 조례 정비)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공보건의료 재단의 운영) 삭제(제4조 제1항)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개정(제4조 제2항)
 - ▶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수행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 위탁기관을 서울의료원으로 명확화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 개정(부칙 제4조제3항)
 - ▶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부칙 제4조4항)
 -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 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4)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3. 4. 13.~ 5. 3.) 결과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서재룡(☎2133-9235)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보건의료사업 제3조의3을 제3조의2로 한다.

제13조를 “①”을 삭제한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직원에 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정원외 직원 포함)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 근로계약 방식과 보수체계, 승진 등 제반 근로조건은 의료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를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위탁운영)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위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4호 중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6호 아목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3조(사업)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8. ----- <u>시장</u>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제3조의3</u> (생 략)	<u>제3조의2</u> (현행 제3조의3과 같음)
제13조(과태료) ① (생 략)	제13조(과태료)(현행 제1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의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위원회는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상위법령 개정 및 기관(조직)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인 경우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공공의료추진단 서재룡 (02-2133-9235)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재단노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조례와 동일하게 명시 요함 <p>제4조(직원에 대한 조치)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모든 직원(정원의 직원 포함)은 의료원의 직원으로 본다</p> <p>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직원에 대하여 종전의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승진, 보수, 직급, 직책 등에 관하여 기존 의료원의 직원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해고없는 고용 보장 의결” (공기업담당관-30047호 2022.12.26.) -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통합 기본계획(2023.2.23.)에 의한 고용보장 사항 시장 방침 - 市입장은 해고없는 고용보장으로 재단 해산 후 직원들을 서울의료원에 고용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임 - 따라서 노조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 추후 근로조건에 대한 별도의 협의할 예정임
전국공공 노동조합연맹	공공보건의료재단노동조합과 동일한 의견임	위와 동일한 서울시 입장임